

停電에 따른 需用家の 被害補償 문제에 對하여 (下)

Compensation for Power Failure

朴俊河

韓國電力公社 營業部 營業計劃課長代理

〈承前〉

6. 參考資料(關聯法令 및 電氣供給 規程)

가. 民法

第750條(不法行爲의 內容)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손해를 加한자는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758條(工作物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 占有者가 손해를 배상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손해를 방지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第390條(責務不履行과 損害賠償)

채무자가 채무의 內容에 따른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履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電氣事業法

第14條(供給義務)

① 一般電氣事業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그 供給區域內의 一般需要에 응하는 전기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

第15條(供給規程)

① 一般電氣事業者는 電氣料金 其他 供給條件에 關한 供給規程을 定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第17條(供給條件에 關한 義務)

一般電氣事業者는 第15條 第1項의 認可를 받은 供給規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電氣를 供給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電氣의 使用制限等)

① 動力資源部長官은 전기의 供給조정을 하지 아니하면 전기의 供給不足으로 인하여 民間經濟 및 國民生活에 影響이 미치고 公共利益을 損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必要한 限度內에서 使用電力量의 限度, 使用最大電力의 限度, 用途 또는 使用을 停止하여 야 되는 日時를 定하여 一般電氣事業者가 供給하는 電氣의 使用을 制限하거나 受電電力의 容量限度를 定하여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의 受電을 제한할 수 있다.

② 動力資源部長官은 일반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한을 하는데에 必要한 범위내에서 送電을 制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電氣事業法 施行令

第10條 (供給規程의 認可基準)

동력자원부장관은 法 第15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공급규정이 다음 각호에 適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電氣料금이 合理的인 經營下에서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에 供給種別에 따라 定率 또는 定額으로 明確히 정하여져 있을 것
3. 일반전기사업자와 電氣使用者의 責任에 관한 事項 및 電氣計器 其他의 用品과 配線工事 기타의 공사에 관한 內容의 負擔方法이 適正하고 明確하게 定하여져 있을 것
4. 特定인에 대하여 不當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第12條 (電氣의 使用制限等)

① 法第21條의 규정에 의한 전기의 使用제한, 수전제한 또는 송전제한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動力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② 大規模의 電氣供給設備을 設置하거나 變更(증설의 경우에 한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를 供給할 일반전기사업자에게 必要한 사항을 通知하여야 한다.

다. 電氣供給規程

第40條 (供給의 停止)

① 當公社は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수용가에 대하여 電氣의 供給을 停止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發生한 保安上의 危險 때문에 긴급을 要할 경우
2. 수용가가 需用場所내에 있는 當公社の 電氣工作物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실하여 당공사에 重大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第29條 (인입선의 접속)를 위배하였을 경우

4. 電氣工作物의 改造, 變造, 毀損, 造作等에 의하여 전기를 不正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5. 전기요금 및 기타 지불하여야 할 金額을 納期日까지 支拂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수용가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고 當公社에서 그 事由의 해소를 要請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需用家에 대하여 電氣의 供給을 停止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책임있는 事由로 인하여 保安上의 危險이 있을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공사의 전기공급을 阻害하거나 阻害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契約負荷設備 또는 契約受電設備 以外の 設備를 通하여 전기를 使用하였을 경우
4. 契約된 需用場所 또는 契約種別을 違背하여 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5. 第35條(전기사용에 따른 수용가의 協力)에 의한 當公社の 要請을 거절하였을 경우
6. 第36條(수용장소의 出入)에 의한 수용장소의 출입을 正當한 理由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다만 第47條(保安責任 및 調査) 第2項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第46條(對官業務協助)에 의한 당공사의 요청을 正當한 理由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8. 전기를 供給하는 것이 法令에 違背되는 경우
9. 住宅用需用으로서 2回以上 月間 2000kWh를 초과使用하였을 경우

第42條 (供給의 中止 또는 使用의 制限)

① 當公社は 다음 각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전기의 공급을 中止하거나 전기의 使用를 制限할 수 있다.

1. 法令에 정한 바에 따라 動力資源部長官의 指示가 있을 때
2. 부득이한 理由로 인하여 電氣의 供給상환 또는 전압 및 주파수에 異常 불균형 또는 變動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우려가 있을 때
3. 當公社の 전기공작물에 故障이 發生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4. 當公社の 전기공작물의 修繕·變更 其他 工事上 不得已 할 때
5. 非常災害 其他 不可抗力에 의할 때
6. 其他 保安上 부득이 할 때

② 第1項의 경우에는 그 內容을 新聞이나 放送等을 通한 廣告, 公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수용에게 미리 통지한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第44條 (損害賠償의 免責)

當公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需用家가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第13條(需用家の 責任있는 事由로 인한 供給 契約의 廢止)에 의하여 供給契約을 廢止하였을 때
- 2. 第42條(供給의 中止 또는 使用의 制限)에 의하여 전기의 供給을 中止하였거나 電氣의 使用을 制限하였을 때
- 3. 第40條(供給의 停止)에 의하여 電氣의 供給을 停止하였을 때
- 4. 當公社의 責任있는 事由가 아닌 누전 기타 사고가 發生하였을 때

〈日 本〉

(8) 供給의 中止 또는 使用의 制限 或은 中止 (75) 78 供給의 中止 또는 使用의 制限 或은 中止

(1) 當社는 다음의 境遇에는 供給時間中에 電氣의 供給을 中止하고 또는 需用家에게 電氣의 使用을 制限하고 或은 中止할 수 있습니다.

- 가. 法令의 規程에 따른 通商産業大臣의 指示에 依할 境遇
- 나. 異常渴水等으로 因하여 電氣의 供給上 不得已할 境遇
- 다. 當社의 電氣工作物에 故障이 發生하고 또한 故障이 發生할 憂慮가 있을 境遇
- 라. 當社의 電氣工作物의 修繕, 變更 其他의 工 事上 不得已할 境遇
- 마. 非常變災의 境遇
- 바. 其他 保安上 必要가 있을 境遇

(2) (1)의 境遇에는 當社는 미리 그 趣旨를 廣告, 其他에 依하여 需用家에게 通知합니다. 但, 緊急 不得已할 境遇는 此限에 不在합니다.

(10) 損害賠償의 免責 (77)

80 損害賠償의 免責

(1) 75(供給의 中止 또는 使用의 制限 或은 中止) (1)에 依하여 電氣의 供給을 中止하고 또는 電氣의 使用을 制限하고, 或은 中止한 境遇에 그것이 當社의 責任으로 되지 않는 理由로 因한 것일 때에는 當社는 需用家가 받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의 責任을 지지 않는다.

(2) 48(解約等)에 依하여 需給契約을 解約한 境遇 或은 需給契約이 消滅된 境遇 또는 72(供給의 停止)에 依하여 電氣의 供給을 停止한 境遇에는 當社는 需用家가 받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의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台灣電力〉

제45조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전력공급을 정지하거나 또는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행정부 법령, 또는 주관기관 명령에 의할 때
- (2) 천재지변을 당하였거나 인화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된 사항
- (3) 전력설비를 수리하거나 또는 기타공사상 필요할 때
- (4) 기타 전력공급 안전상의 필요에 의할 때

상기 각항중 사전연락할 수 없는 사고에 인한 것은 제외하고 정상 참작하여 신문광고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전통제해야 한다.

제47조 전 3개조로 인한 정전으로 수용가에 미친 여하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美 國〉

*** * Pacific Gas & Electric Company (San Francisco, California)**

공급부족 및 공급정지 (규정 No.14)

회사는 수용가에게 계속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과 주의를 할 것이나 중단 없는 충분한 전력공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전력공급 정지, 공급부족, 공급불충분 등이 불가피한 사고나 천재, 화재, 파업, 폭동, 전쟁 그리고 기타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Texas Power & Light Company**

전력공급의 계속성 (Item No. 3)

회사는 안정되고 계속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하겠으나 전압, 전류, 주파수의 불규

칙이나 중지, 변동없이 전력공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전력부족, 전력제한, 연료절약, 정부의 조치 기타 회사의 능력을 초월한 상황으로 불규칙한 공급 즉 중단, 중지, 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Appalachian Power Company**
(Roanoke, Virginia)

회사의 임무 (Tariff No.10)

회사는 규칙적이고 정전없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합당한 노력을 할 것이나 정전없는 전력공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다음의 경우와 같은 정전으로 인한 수용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1) 천재, 소요, 사고, 노동분규, 정부 또는 준기관의 명령 또는 조치
- (2) 회사의 기기, 송배전선로 또는 기타설비의 고장 및 비상 보수
- (3) 공급계통의 불안이나 지장을 방지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예고된 정전

*** 2 分講座 ***

〈電氣工學의 수수께끼〉 ④

夜景을 繡놓는 네온管的 構造는 ?

都會의 밤하늘을 7色으로 繡놓는 네온사인은 現代社會의 액세서리이며 經濟活動의 象徴이기도 하다. 네온(Neon)이라는 말은 그리스語의 Neos(새로운 그 무엇)을 뜻하는 말로써 새로운 稀有가스의 發見에 그 名稱이 由來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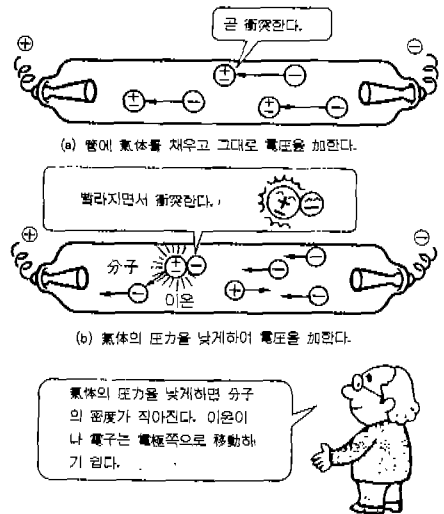
네온사인은 大概가 길이 10m 정도로 굵어 12000~15000 V 가량의 高電壓을 연결하면 點燈한다. 現在 一般的으로 사용되는 네온管的 直徑은 14mm이다. 이것은 管子가늘어지면 높은 電壓을 必要로 하며 管子가 굽으면 낮은 電壓이라도 좋으나 管子의 굽기가 14mm를 境界로 그것보다 가늘어지면 갑자기 電壓이 增加하는데서 이 굽기를 基準으로 하고 있다.

네온의 發光色은 封入하는 가스의 相違, 유리管에 塗하는 螢光塗料의 相違, 유리의 着色의 變化等에 依해 여러가지를 얻을 수 있다.

〈네온管이 發光하는 原理는 ?〉

유리管과 電極部分은 버어너의 熱로 接觸한다. 電極이 부착되어 있는 유리管에 氣體를 채우고 管子의 兩端에 電壓을 加해도 그 狀態로서는 普通, 電流은 흐르지 않으며 發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氣體의 分子는 一部 電離되어 이온이나 電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電壓을 加하면 우선은 움직이게 되나 곧 다른 分子와 衝突함으로써 움직임은 활발해지지 않는다. (그림a)

그러나 管子속의 氣體 壓力을 낮게해주면 分子의 密度는 작아지는데 이 狀態에서 電壓을 加하면 움직이기 시작한 이온이나 氣體는 다른 分子와 衝突하는 일이 적으며, 衝突하기까지는 充分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리고



加速度를 갖고 衝突함으로써 衝突하는 相對의 分子를 깨뜨려 쉽게 電離한다.

이렇게 되면 이온이나 電子의 數는 增加하여 電極쪽으로 移動하기 때문에 電流가 흐른다(放電이 이루어진다 그림b)

이때에 衝突에 의해 빛이 나는 原子가 생기게 되어 氣體는 아름답게 發光한다. 네온가스를 채우면 붉게 빛나며, 水銀의 蒸氣를 넣으면 밝은 靑綠色의 發光을 한다. 그리고 요즘은 螢光사인의 出現에 의해 靑, 綠, 黃, 핑크, 白, 靄光色等 多彩로운 것이 만들어 지고 있다.

一般的으로 放電管은 한번 放電이 시작되면 이온이 많이 생겨, 電流의 疎通은 容易해진다.